

예산총칙

2018년도 추경 2 회

제 1 조 2018년도 세입·세출 예산총액 및 회계별로 일시 차입할 수 있는 최고액은 다음과 같다.

(단위:천원)

구 분	세입·세출예산총액	일시차입한도액
합 계	1,051,900,000	31,557,000
일반회계	860,000,000	25,800,000
특별회계	191,900,000	5,757,000
공기업특별회계	51,500,000	1,545,000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28,800,000	864,000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22,700,000	681,000
기타특별회계	140,400,000	4,212,000
수질개선특별회계	4,931,000	147,930
의료보호비특별회계	2,365,000	70,950
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특별회계	843,000	25,290
새마을소득특별지원운영특별회계	3,507,000	105,210
주택사업특별회계	703,000	21,090
치수사업특별회계	18,931,000	567,930
주차장운영특별회계	6,969,000	209,070
대지보상특별회계	315,000	9,450
김천일반산업단지조성사업특별회계	89,373,000	2,681,190
김천시폐기물처리시설사업특별회계	12,100,000	363,000
댐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	363,000	10,890

제 2 조 세입·세출예산의 명세는 "세입·세출예산 명세서"와 같다.

제 3 조 일반회계 예비비는 21,688,616천원으로 한다.